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05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의자 : 정일영 · 송옥주 · 박해철

허성무 · 조인철 · 이병진

박용갑 · 문금주 · 서영석

이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 ·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의 정보를 유포하여 여론 왜곡과 사회적 갈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흡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정치적 ·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불법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

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으로 한다.

2의2.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 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 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5. 행위자의 재산상태
6.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유통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신설>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p><u>4. 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u></p> <p><u>5. 행위자의 재산상태</u></p> <p><u>6.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u></p>
제74조(별 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별 칙)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u> <u>를 위반하여 정치적 · 경제적</u> <u>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u> <u>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u> <u>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u> <u>를 유통한 자</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